

제2770호  
2020. 9. 24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
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 
전화: 3396-4955  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# 구 보

●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0-698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...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 
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  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-698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9월 2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일부개정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수료 감면 조항을 구체화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수수료의 감면 구체화(안 제13조)
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...
    - ⇒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...
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
    - ⇒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환경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), 전화: 3396-5612, fax: 3396-8761, 메일: dreamtree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1부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개정한다.

제13조제1호 중 “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”를 “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권자”로 개정하고 “납부의무”를 “납부 의무”로 개정한다.

제13조제2호 중 “제5조에 따른 유족”을 “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”으로 개정한다.

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수수료의 감면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</p> <p>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③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	<p>제13조(수수료의 감면)-----각 호의 -----</p> <p>-----</p> <p>① -----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</p> <p>② -----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-----</p> <p>③ -----</p>